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기에 임신·출산·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,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·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지원대상(안 제6조)
- 4)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- 5)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6) 중복지원의 제한 등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청소년부모”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함
- “청소년부모 가정”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)로 이뤄진 가정으로 함

나) 구청장의 책무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- 구청장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
-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

다) 지원대상(안 제6조)

-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(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)와 그 자녀로 함

라)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
-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마)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·출산 지원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의2~제18조의5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함

바) 중복지원의 제한 등(안 제12조)

금천구 청소년부모 대상자 현황

- 청소년부모 가정 수 : 1세대 / 3명(시흥 3동)

※ 독산2동 1세대, 3명(2024. 7. 29. 신청 및 조사중)

지원실적

(2024. 8. 기준)

구 분		‘24년	‘23년	‘22년 7월~	비 고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(국·시비)	집행내역	12명	47명	36명	누계
	집행액	3,000천원	9,400천원	7,200천원	
서울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(전액시비)	집행내역	12명	19명	-	‘23년 7월부터 시행
	집행액	2,400천원	3,800천원	-	

3) 검토 의견

- 청소년 한부모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,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,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(2021. 3. 23)이 개정됨.
- 상위법령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 과 취업, 자녀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